

# 무배당 확정금리 저축보험

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



## 확인서

무배당 확정금리 저축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. 끝.

2022년 6월 일

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

선임계리사 남 효 성 (인)

# 사업방법서

(사업방법서 별지)

## 무배당 확정금리 저축보험

### 1. 보험종목의 명칭

무배당 ①확정금리 ②저축보험 ③

※ 동 상품은 상품 명칭에 판매경로(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)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, ② 또는 ③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.

### 2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

보험기간	보험료 납입기간	가입나이	보험료 납입주기
5년만기	일시납	만 15세~80세	일시납

### 3.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 4. 배당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 5. 보험료에 관한 사항

이 계약의 납입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본보험료로 한다.

- 기본보험료 : 1,000 만원 이상

### 6.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 7.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 8. 해지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 9.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# 10. 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

가.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 개월부터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,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

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1 회 인출 최고한도는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(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)의 50%를 최고한도로 하고,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인출 후 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2% 미만인 되지 않아야 한다.

나. '가'에도 불구하고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(유지관련비용)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.

다. 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적립액(해지환급금)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만기보험금 또는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.

## 11.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12.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

가.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(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)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(이하 '보험계약대출'이라 한다)을 받을 수 있다.

나. 계약자는 '가'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,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,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.

다.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.

## 13. 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

가. 회사는 아래의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도달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 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한다.

유지보너스 발생일	유지보너스 해당금액
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 연계계약해당일	기본보험료의 1.2%
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시점 연계계약해당일	기본보험료의 1.0%

나.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보너스 금액을 계산한다.

## 14. 기타

가.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

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보험료 납입주기, 가입나이,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.

나. 연금전환에 관한 사항

(1)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해서 계산된다.

(2)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은 전환시의 기초서류(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)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.

다.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

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(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)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.

라.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

- (1)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4-14 조(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)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.
- (2) 이 보험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9%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(별첨 제 1 호)

## 보험증권의 서식



(별첨 제 2 호)

##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

(별첨 제 3 호)

## 보험계약 부활(효력회복)청약서의 서식